

「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」 일부개정안

1. 개정 이유

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[경제관계장관회의 <2024. 8. 28.>](#) 결과에 따라 유류비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유가연동보조금 정의(안 제3조)

: [경제관계장관회의 <2024. 8. 28.>](#) 변경

나. 유가보조금 지급기간(안 제5조)

: [\(유가연동보조금\) 2023년 7월 11일 ~ 2024년 10월 31일](#)

다. 시행일

- [2024년 9월 6일\('24년 9월 1일 주유·충전한 분부터 소급 적용\)](#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[경제관계장관회의\('24.8.28.\)](#)

라. 기 타 : 해당 없음

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

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나목 중 “물가경제차관회의 <2024. 6. 21.>”를 “경제관계장관회의 <2024. 8. 28.>”로 한다.

제5조 유가연동보조금은 “2024년 8월 31일”을 “2024년 10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유가연동보조금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전 2024년 9월 1일의 주유·충전한 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(생 략)	제3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가. (생 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<u>물가경제차관회의 <2024. 6. 21.></u> 결과에 따라 경유 가격	나. <u>경제관계장관회의 <2024. 8. 28.></u> -----
및 천연가스(CNG) 가격의	-----
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가연	-----
동보조금	-----
2. ~ 11. (생 략)	2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5조(유가보조금 지급기간) 유가	제5조(유가보조금 지급기간) ---
보조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	-----
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	-----
지급한다. 다만, 제3조제1호나목	-----.
의 유가연동보조금은 2023년 7월	-----
11일부터 <u>2024년 8월 31일</u> 까지	----- <u>2024년 10월 31일</u> -----
한시적으로 지급한다.	-----.